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

조직 및 재정에 관한 공동규칙

서 문

대한민국 외교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및 해외문화홍보원과 프랑스 외교국제개발부 및 문화홍보부는 한-불 양국 대통령이 2010년 11월 정상회담에서 2016년 양국 수교 130주년을 기념하여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이하 '한-불 상호교류의 해')행사를 추진하기로 합의하였고, 2013년 11월 정상회담에서는 동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다짐하였음을 재확인한다. 동 행사는 한-불 양국간 교류 확대와 양국 국민간 보다 나은 이해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동 행사는 양국의 여러 지역에서 문화, 무역, 투자, 과학, 기술, 관광, 체육, 교육 및 청소년 교류를 비롯한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준비될 것이며, 특히 양국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 현대적인 창의성과 젊은 세대의 참여에 중점을 둔다.

다음 기관(이하 '주무기관')이 양국의 관계부처 및 재외공관과 협력하여 행사를 조직한다. :

- 한국측 :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
- 프랑스측 : 외교국제개발부 산하 프랑스 대외문화정책을 담당하는
앵스티튜 프랑세(Institut Français)

양측 조직위원회는 아래와 같이 구성된다

한-불 상호교류의 해 조직위원장 :

한국측 :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프랑스측 : 앙리 루아레트(Henri Loyrette) 국사원 참사(Conseiller d'Etat)

한-불 상호교류의 해 준비기획단 및 사무국 :

한국측 : 김동기 외교부 문화외교국장(공동 준비기획단장), 이우성 해외
문화홍보원 기획관(공동 준비기획단장) 및 최준호 예술감독

프랑스측 : 다니엘 올리비에(Daniel Ollivier) 한-불 상호교류의 해 사무
총장 및 앵스티튜 프랑세 상호교류행사과

한-불 상호교류의 해 기간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프랑스내 한국의 해 : 2015년 9월 - 2016년 8월

한국내 프랑스의 해 : 2016년 1월 - 12월

동 공동규칙은 양측의 주무기관, 준비기획단 및 사무국의 의무와 권한을 규정한다.

I. 협력기관

양측 주무기관은 한-불 상호교류의 해 준비에 참여할 지자체(시, 군, 도), 공공 및 사설 문화기관, 미디어, 기업, 사립재단 및 여타 기관 등을 비롯한 공공 및 민간기관의 지원을 받는다. 특히 양국 재외공관과 긴밀히 협력한다.

II. 조직위원회, 준비기획단 및 사무국

양측의 한-불 상호교류의 해 준비기획단장과 사무총장은 양측 조직위원장과 긴밀한 협력하에 행사 구성 및 협력자 물색을 책임진다. 이들은 공동으로 수립한 행사 기본 방향에 일치하도록 양측 행사의 조화와 일관성을 함께 모색한다.

양측 준비기획단장과 사무총장은 상호 협의하여 행사를 선정하고, 협력 관계를 물색하며, 양측 조직위원장과 함께 언론 및 대중에게 한-불 상호교류의 해 행사를 대표한다.

III. 조직구성

공동회의체(CMO, Comité mixte d'organisation)는 양측 주무기관, 재외공관, 양측 준비기획단장과 사무총장 및 양측 주무기관이 참여를 허용하는 관계기관 등으로 구성되며, 한국과 프랑스에서 번갈아 회의를 개최한다. 회의에서는 행사, 홍보계획, 주요 재정원칙 및 기타 행사준비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하며, 회의 결과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양측의 동의 및 승인을 통해 공식 문서화한다.

IV. 행사 유형

행사는 다음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

- 유형 1 : 양측 중 일방에서만 관심을 보이고, 타방에서는 반대하지 않는 행사로서 관심있는 일방에서 행사 개최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며, 개최 및 재원

조달 방식과 이행조건을 보장한다. 이에 대해 사례별로 검토하며 공동회의 의사록에 별도로 기록한다. 유형 1에 해당하는 행사도 양측의 공식인증 (labellisation) 대상이 된다.

- 유형 2 : 양측의 합의로 주최하는 행사로서 재원분담은 본 공동규칙 5항에 명시된 원칙을 따른다. 유형 2에 해당하는 행사는 양측의 공식인증 (labellisation) 대상이 된다.

- 유형 3 : 공동회의체(CMO)의 구성원이 아닌 여타 기관·단체·조직에 의해 자율적으로 기획된 행사로서 양측은 본 공동규칙 7항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공동으로 공식인증(labellisation)을 결정한다. 양측은 각각 유형 3 행사 이행을 위한 추가적인 재정 지원을 결정할 수 있다.

V. 재정원칙

한-불 상호교류의 해 행사를 위한 기본재원은 본 공동규칙의 체결당사자인 양측 주무기관에서 일차적으로 조달하도록 한다.

동 재원에 추가하여 양측은 자국의 관계기관(중앙부처, 지자체, 민관 문화조직, 미디어, 기업, 사립재단)도 한-불 상호교류의 해 행사 재원조달에 참여할 것을 독려한다.

행사 비용은 아래와 같이 분담한다 :

프랑스 내 한국의 해

파견국 한국 부담 부분 :

- 한국측 전문가 및 실무자의 프랑스 답사활동 비용
- 한국 예술인, 행정 및 기술인력의 프랑스까지의 항공료 및 보험료
- 프랑스 내 첫 전시 혹은 공연 장소까지 작품 및 화물 왕복운송료
- 전시회를 위한 «clou à clou» 보험(원소재지에 설치되어 있던 작품을 탈착하는 시점에서부터 다시 원소재지로 복귀시킬 때까지, 즉 프랑스 내 체류기간과 운송기간 / 세관구역까지 포함)
- 작품의 최초제작 비용
- 시각예술작품 및 문화재의 경우, 홍보물 제작(저작권 유효)을 위한 기술적 자료 송부 및 영화(저작권 유효)의 붙어자막 제공 비용

접수국 프랑스 부담부분 :

- 프랑스측 전문가 및 실무자의 한국 답사활동 비용
- 프랑스 지방순회 일정시 국내 이동비용
- 한국측 제안 행사 진행 담당자 물색 비용
- 접수비용 : 해당 기관간 협상을 통해 정한 사례비, 일비, 숙박비(정액지급), 장소 대여료, 현지제작비용, 무대장식 및 설치비, 시청각 자재비, 카탈로그 제작비, 홍보비, 경비(보안) 비용

한국 내 프랑스의 해

파견국 프랑스 부담부분 :

- 프랑스측 전문가 및 실무자의 한국 답사활동 비용
- 프랑스 예술인, 행정 및 기술인력의 한국까지의 항공료 및 보험료
- 프랑스 내 첫 전시 혹은 공연 장소까지 작품 및 화물 왕복운송료
- 전시회를 위한 «clou à clou» 보험(원소재지에 설치되어 있던 작품을 탈착 하는 시점에서부터 다시 원소재지로 복귀시킬 때까지, 즉 프랑스 내 체류 기간과 운송기간 / 세관구역까지 포함)
- 작품의 최초제작 비용
- 시각예술작품 및 문화재의 경우, 홍보물 제작(저작권 유효)을 위한 기술적 자료 송부 및 영화(저작권 유효)의 한국어 자막 제공 비용

접수국 한국담당 부분 :

- 한국측 전문가 및 실무자의 프랑스 답사활동 비용
- 한국 지방순회 일정시 국내 이동비용
- 프랑스측 제안 행사 진행 담당자 물색 비용
- 접수비용 : 해당 기관간 협상을 통해 정한 사례비, 일비, 숙박비(정액지급), 장소 대여료, 현지제작비용, 무대장식 및 설치비, 시청각 자재비, 카탈로그 제작비, 홍보비, 경비(보안) 비용

상기 재정조달원칙에 적용되지 않는 여타 행사에 대해서는 양측간 별도 협의하되 책임분담은 서면으로 명시한다.

VI. 계약 체결 :

모든 행사의 계약 체결은 행사를 준비하는 한-불 양측의 국공립기관

또는 민간기관간에 직접 이루어진다. 양측 주무기관(한국측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 및 프랑스측 앙스티투 프랑세)은 해당 기관을 대리하여 계약하거나, 이에 대한 책임을 대신할 수 없다.

상대국 내 지방순회가 있을 경우 해당 기관간의 운송 및 안전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계약서를 통해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VII. 행사 기획 및 공식인증(labelisation)

행사 기획은 우선적으로 양측 준비기획단장과 사무총장이 수립·제안한 행사들과, 이외 양측의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에서 수립·제안한 행사들에 기초하며, 상대측 협력 기관들과의 합의에 따른다.

양측 준비기획단장과 사무총장은 양측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에서도 행사를 제안하여 공동회의체(CMO)의 승인을 받도록 권고한다.

양측 준비기획단장과 사무총장은 양측이 공동으로 정한 일정에 따라, 행사를 등록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여, 공동회의체(CMO) 개최 이전에 제출된 행사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1. 공식인증

공동회의체(CMO)는 양측 준비기획단장과 사무총장이 공동 수립한 기본 방향에 부합하는 사업에 대하여 주무기관의 자문을 구한 뒤, 양측이 공동 수립한 자격기준에 의거하여 공식행사로 인증한다.

예외적으로, 공식 협의체인 공동회의체(CMO)와는 별도로 양측 준비기획단장과 사무총장은 한-불 상호교류의 해 기간 중 주무기관의 자문을 구한 뒤, 주무기관의 동의에 따라 공동 합의하에 공식인증을 결정할 수 있다.

공식행사로 인증되면 양측 또는 일방의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 어떠한 경우에도 공식인증이 자동적으로 재정지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공식적으로 인증을 받은 행사의 주관자는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 로고 부착 및 의무기재사항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의무를 갖는다.

양측 가운데 일방에서 민간기금 또는 지자체 지원금을 동원하여 재원을 조달한 경우에는 아래 명시한 로고와 의무기재사항 외에도 재정지원 출처에

따라 필요시 보완 내용이 추가될 수 있다(예를 들어 개인 후원자 또는 지자체, 후원위원회의 로고 및 의무기재사항).

공식인증을 받은 모든 행사는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 전체 홍보 대상에 포함된다.

공식행사로 인증되면, 양측 준비기획단장과 사무총장은 자국 행사 주관자에게(한국측 준비기획단장은 한국 주관자에게, 프랑스측 사무총장은 프랑스 주관자에게) 채택승인 사실을 알리는 양측 공통양식 서한을 송부한다. 동 서한을 통해 공식 인증된 행사 주관자에게 해당 행사가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 공식 행사로 인증되었다는 사실과 의무사항을 통보한다.

2. 라벨부여의 취소

공동회의체(CMO)는 공식 인증된 행사가 한-불 상호교류의 해 기본방향에 명백히 부합하지 않거나, 행사 이미지를 현저히 실추시켰다고 판단될 경우, 주무기관의 자문을 구한 뒤, 양측이 공동 수립한 기준에 의거하여 공식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예외적으로, 공식협의체인 공동회의체(CMO)와는 별도로 양측 준비기획단장과 사무총장은 한-불 상호교류의 해 기간 중 주무기관의 자문을 구한 뒤, 주무기관의 동의에 따라 공동 합의하에 공식인증의 취소를 결정할 수 있다.

공식인증의 취소가 결정되면, 양측 준비기획단장과 사무총장은 한국과 프랑스의 행사 주관자에게 공식인증의 취소 사실과 취소 사유를 통보하는 공동명의 서한을 송부한다.

3. 로고 및 의무기재사항:

한-불 상호교류의 해 행사의 일환으로 공식인증을 받는 각각의 행사는 모든 홍보 자료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 로고
- 한국측 기관 로고 일체 : 외교부 로고, 문화체육관광부 로고 및 해외문화홍보원
- 프랑스측 기관 로고 일체 : (프랑스 내 행사의 경우) 앵스티튜 프랑세 로고, 프랑스 외교국제개발부 및 문화홍보부의 '마리안느' 로고, (한국 내 행사의 경우) 주한 프랑스대사관의 '마리안느' 로고

- 다음의 최소 의무기재 사항 :

<<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 참가행사 + 공식 웹사이트 기재 >>

이외 가능한 경우 다음과 같은 긴 버전을 기재한다 :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 주최 :

한국측 :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 주프랑스대한민국대사관,
미래창조과학부, 농림축산식품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전국시도지사
협의회, 서울특별시, 한국국제교류재단

한-불 상호교류의 해 조직위원장 : 조양호 ; 준비기획단장 : 외교부 문화외교국장,
해외문화홍보원 기획관

프랑스측 : 앙스티튜 프랑세 및 외교국제개발부, 문화홍보부, 경제산업디지털부,
교육연구부, 도시청소년체육부, 농업식품산림부, 주한프랑스대사관

한-불 상호교류의 해 조직위원장 : 앙리 루아레트(Henri Loyrette) ; 사무총장 :
다니엘 올리비에(Daniel Ollivier)

상기 기재내용은 필요시 양측간 합의하에 변경 가능하다.

VIII. 로고와 그래픽

한국과 프랑스 내에서 이루어지는 한-불 상호교류의 해 행사 이미지의 통일성과 비용 분담을 위해 양측은 행사에 이용할 공동로고와 시각적 정체성 (identité visuelle), 그래픽을 공동으로 결정한다. 프랑스측은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를 위한 공동로고 및 시각적 정체성을 한국측에 제안한다.

이를 위해 프랑스측은 양측 주무기관이 공동으로 수립한 합의서에 따라 공모를 진행한다. 공동회의체에서 최종 결정한다.

결정된 로고제작업체는 저작물 사용권과 그래픽 변형물 사용권(droits d'exécution et de déclinaison graphique)을 양측 주무기관에 양도하고, 양측 주무기관이 선정한 홍보대행업체가 프랑스와 한국에서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양측은 공동으로 4만 유로의 공동 기금을 마련하기로 2014년 합의하며 이는 상기 언급된 기준에 따라 로고, 시각적 정체성 및 그래픽의

제작에 사용키로 한다. 동 금액의 절반은 프랑스측에서 앙스티튜 프랑세가, 한국측에서는 외교부와 해외문화홍보원이 나머지 절반을 분담한다.

공동로고 제작에 소요되는 용역비용은 앙스티튜 프랑세가 선정된 로고 제작업체에 지불한다.

프랑스측은 상기 4만 유로의 사용내역을 한국측에 통보한다. 필요한 경우 양측은 공동기금의 잔액의 사용에 대해 합의한다.

IX. 홍보 계획

동 홍보 계획은 한-불 상호교류의 해에 대한 일반적 홍보(전체 홍보, 공동 운영 웹사이트 및 미디어홍보)에 관한 것으로, 동 행사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개별 행사 홍보는 해당 행사 주최기관이 담당한다.

프랑스내 한국의 해 홍보

양측은 프랑스 내 한국의 해 홍보계획 개발과 이행을 위하여 공동으로 수립한 합의서 및 한국측이 제시한 전략방향에 부합하는 단독 또는 다수의 홍보 대행업체를 선정한다. 수립된 홍보계획은 양측 주무기관, 한국측 준비기획단, 프랑스측 사무국의 공동 승인을 받는다. 한국측은 선정된 홍보대행업체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담당할 사람을 지정한다.

이를 위하여 프랑스측에서 프랑스에서 활동하는 전문 홍보 대행사를 공모하고, 양측 주무기관(앙스티튜 프랑세, 해외문화홍보원)은 홍보대행업체 선발위원회에 참여하며, 삼자계약 형식을 통해 선정된 홍보대행업체비용을 절반씩 부담한다. 양측은 추후 동 공동규칙의 추가 조항을 통해 프랑스 내 한국의 해 홍보를 위한 예산을 결정하고, 해당 예산은 한국 내 프랑스의 해 홍보예산과 동일하게 책정한다.

프랑스 내 한국의 해 관련 홍보활동은 책정된 홍보예산 내에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프랑스 내 한국의 해 관련 홍보활동을 확대하여, 책정된 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한국측에서 동 초과비용을 부담하고, 한국측은 프랑스측에 관련 사항을 통보하여 공동수립한 홍보계획의 일관성에 저촉되지 않도록 한다. 프랑스측은 초과비용의 액수와 사용에 관해 조언을 제공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추가적인 홍보작업을 수행하는데 도움을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사항에 관해서는 양측이 서면으로 그 내용을 합의한다.

한국 내 프랑스의 해 홍보

양측은 한국 내 프랑스의 해 홍보계획 개발과 이행을 위하여 공동으로 수립한 합의서 및 프랑스측이 제시한 전략방향에 부합하는 단독 또는 다수의 홍보 대행업체를 선정한다. 수립된 홍보계획은 양측 주무기관, 한국측 준비기획단, 프랑스측 사무국의 공동 승인을 받는다. 프랑스측은 선정된 홍보대행업체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담당할 사람을 지정한다.

이를 위하여 한국측에서 한국에서 활동하는 전문 홍보 대행사를 공모하고, 양측 주무기관(엥스티튜 프랑세, 해외문화홍보원)은 홍보대행업체 선발위원회에 참여하며, 삼자계약 형식을 통해 선정된 홍보대행업체비용을 절반씩 부담한다. 양측은 추후 동 공동규칙의 추가조항을 통해 한국 내 프랑스의 해 홍보를 위한 예산을 결정하고, 해당 예산은 프랑스 내 한국의 해 홍보예산과 동일하게 책정한다.

한국 내 프랑스의 해 관련 홍보활동은 책정된 홍보예산 내에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한국 내 프랑스의 해 관련 홍보활동을 확대하여, 책정된 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프랑스측에서 동 초과비용을 부담하고, 프랑스측은 한국 측에 관련 사항을 통보하여 공동수립한 홍보계획의 일관성에 저촉되지 않도록 한다. 한국측은 초과비용의 액수와 사용에 관해 조언을 제공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추가적인 홍보작업을 수행하는데 도움을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사항에 관해서는 양측이 서면으로 그 내용을 합의한다.

X. 후원(메세나)

양측은 각각 민간 협력기관이 한-불 상호교류의 해 행사를 위한 기금 조성 활동에 참여할 것을 독려한다. 이는 후원사 활동, 재정적 지원, 현물 및 필요한 전문인력 제공 등 다양한 형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양측은 상대국의 후원사(자)에 대한 교섭을 시작하기 전에 상호 협의토록 하며, 후원 활동이 해당 후원사(자)에게 만족스러운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후원을 통해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의 대외 이미지가 제고될 수 있도록 한다.

XI. 수정 및 서명

동 공동규칙조항은 양측의 협의에 의해 수정될 수 있다.

2014년 월 일 한-불 양측은 한국어와 프랑스어로 작성된 동등한 효력을 가지는 양국어 정본 6부에 서명하였다.

한국의 외교부를
대표하여:

한국의 해외문화홍보원을
대표하여:

프랑스의 앙스티튜
프랑세를 대표하여:

김동기
외교부 문화외교국장

이우성
기획관

Mme Anne TALLINEAU
앙스티튜 프랑세 사무총장